

2016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공고

2016년 4월 21일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6-38호 「2016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공고」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하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결정

- 채점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재 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정정 결정

2. 필기시험 합격자가 정정되는 지역 : 서울

- 소방전공학과에 응시한 수험생 남 · 여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남자 (응시번호)	○ 합 격 : 11-0153, 11-0425 ○ 불합격 : 11-0833, 11-0500 11-0477, 11-0832	○ 합 격 : 11-0833, 11-0500 11-0477, 11-0832 ○ 불합격 : 11-0153, 11-0425
여자 (응시번호)	○ 합 격 : 12-0093, 12-0178 ○ 불합격 : 12-0030, 12-0012	○ 합 격 : 12-0030, 12-0012 ○ 불합격 : 12-0093, 12-0178

3. 체력시험 일정

- 가. 일 시 : 5. 9.(월) ~ 5. 13.(금) 09:00~18:00 / 체력시험 일정 「붙임 2」
- 나.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센터 체육관
- 다.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스파이크 금지)
- 라.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붙임 4」
- 마.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 5」 참조**

※ 금지약물 발견 시 합격 취소 및 형사적 제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유발하는 약물은 “감기약(메틸에페드린)” 복용으로 검출이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어도 3일전 부터는 감기약 복용에 주의.**

바. 응시자 유의사항

- 합격자는 해당 시험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시작 전 30분까지 체력시험 등록완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간 내 미 등록시 체력시험 불가**
- 일자별, 차수별 등록완료시간 : 1차(08:30), 2차(12:30), 3차(15:00)

4.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987명)

가. 기 간 : 2016. 5. 9.(월) ~ 5. 13.(금)

나. 방 법 : 체력시험 등록 시 본인 직접제출

다.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센터 1층 체육관

라. 구비서류

구분	전문분야	소방전공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원 전역자
	항공운항관리자			
개별	1. 직무분야의 근무 경력증명서 1부 2. 연구경력 증명서 1부(연구경력자)	1. 졸업증명서 1부	1.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2. 졸업증명서 1부	1.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사본 1부
공통	기본증명서 1부, 1종 또는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가산특전대상자).			

※ **전문인력(항공운항관리전문가)합격자는 구비서류 우편 제출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인재채용팀 소방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5. 기타 안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119gosi.kr)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2016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별첨).
2. 필기시험 합격자 체력시험 일정 1부.
3.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서식) 1부.
4. 체력시험 기준표(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별표 7)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도핑테스트 안내 1부. 끝.

필기시험 합격자 체력시험 일정

날 짜	시 간	응시번호	인 원	비 고
5. 9.(월) 183명	09:00 ~	11-0007 ~ 11-0833	18명	소방(남) 서울
		11-0109 ~ 11-0827	10명	소방(남) 광주
		11-0061 ~ 11-0693	7명	소방(남) 대전
		11-0152 ~ 11-0843	6명	소방(남) 세종
		11-0055 ~ 11-0874	6명	소방(남) 충북
		11-0047 ~ 11-0823	8명	소방(남) 창원
	13:00 ~	11-0080 ~ 11-0855	40명	소방(남) 경기
		11-0028 ~ 11-0852	22명	소방(남) 경북
	15:30 ~	11-0099 ~ 11-0856	34명	소방(남) 전북
11-0034 ~ 11-0866		32명	소방(남) 경남	
5. 10.(화) 185명	09:00 ~	21-0089 ~ 21-1021	30명	응급(남) 서울
		21-0031 ~ 21-1009	37명	응급(남) 충남
	13:00 ~	12-0005 ~ 12-0184	32명	소방(여) 합격자 전부
		22-0050 ~ 22-0493	19명	응급(여) 서울
		22-0049 ~ 22-0501	7명	응급(여) 인천
		22-0225 ~ 22-0374	3명	응급(여) 대전
	15:30 ~	22-0008 ~ 22-0494	4명	응급(여) 세종
		22-0027 ~ 22-0363	12명	응급(여) 경기
		22-0052 ~ 22-0506	6명	응급(여) 강원
		22-0151 ~ 22-0481	6명	응급(여) 충북
		22-0071 ~ 22-0505	7명	응급(여) 충남
		22-0039 ~ 22-0503	3명	응급(여) 전북
		22-0145 ~ 22-0452	3명	응급(여) 경북
		22-0104 ~ 22-0465	16명	응급(여) 경남
		5. 11.(수) 196명	09:00 ~	21-0005 ~ 21-0439
13:00 ~	21-0449 ~ 21-0959		66명	응급(남) 인천
15:30 ~	21-0964 ~ 21-1027		7명	응급(남) 인천
5.12.(목) 205명	09:00 ~	21-0011 ~ 21-1022	50명	응급(남) 경기
		21-0102 ~ 21-0980	16명	응급(남) 충북
	13:00 ~	21-0019 ~ 21-1018	69명	응급(남) 창원
		21-0029 ~ 21-0979	26명	응급(남) 대전
	15:30 ~	21-0237 ~ 21-0941	6명	응급(남) 세종
		21-0232 ~ 21-0989	22명	응급(남) 전북
		21-0044 ~ 21-0923	16명	응급(남) 경북
		21-0023 ~ 21-0855	70명	응급(남) 경남
5. 13.(금) 209명	09:00 ~	21-0858 ~ 21-1006	12명	응급(남) 경남
		31-0026 ~ 31-0493	46명	의무(남) 경남
		31-0078 ~ 31-0267	5명	의무(남) 창원
	13:00 ~	31-0270 ~ 31-0480	6명	의무(남) 서울
		31-0018 ~ 31-0484	23명	의무(남) 경기
		31-0014 ~ 31-0491	13명	의무(남) 강원
		31-0005 ~ 31-0388	6명	의무(남) 충북
		31-0009 ~ 31-0454	3명	의무(남) 충남
		31-0025 ~ 31-0503	25명	의무(남) 경북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제14조제2항관련)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인 적 사 항	1. 소 속			
	2. 계 급		3. 군 번	
	4. 성 명	한 글:	5. 주민등록 번호	
		한 자:		
6. 주 소				
복 무 사 항	7. 신분구분	의무소방 제 기	8. 복무 기간	20 . . . 임용 20 . . . 퇴직 퇴직예정 면 직
	9. 복무중 임 무			
	10. 퇴 직 년월일	20 . . . 퇴직 · 퇴직예정 · 면직		
	11. 퇴 직 구 분	만기전역, 복무단축전역, 의가사전역, 전임해제, 당연퇴직, 직원면직		
12. 용 도				
<p>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위 사실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소방기관의 장</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원

[붙임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제23조의2관련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체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접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 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I.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치료분석 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